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69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7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20일, 박춘선 의원 외 29명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: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5년 12월 17일 상정,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박춘선 의원]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 제18조 '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'에 관한 사항이 「서울특별시 생태계  
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시행(2025.9.29.)된바,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 
부분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1) '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' 조항 삭제(안 제18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 
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(제정·시행 '25.9.29)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회기 조례 개정(의안번호 제3265호)으로 「생태계 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」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8조<sup>1)</sup>에 규정되어 있는 「생태계 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」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해당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---

1) 제18조(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) 시장은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,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
2.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·방제
3.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,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생 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</p> <p>사업) 시장은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,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</p> <p>2.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·방제</p> <p>3.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,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</p>	<p>〈삭 제〉</p>